



# 2020 산업기능요원 복무 안내서

## Contents



산업기능요원이란?	1
<b>I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b>	3
1-1 병역지정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1-2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1-3 병역지정업체에서 하는 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1-4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1-5 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6 산업기능요원 고충처리를 위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b>II 출장·파견은 갈 수 있나요?</b>	13
2-1 출장·파견을 갈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2 출장을 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2-3 파견을 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b>III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나요?</b>	19
3-1 당연전직, 승인전직으로 업체를 옮길 수 있습니다.	
3-2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옮겨야 합니다.	
3-3 정보처리 직무분야로의 전직은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4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b>IV 휴가, 병가를 갈 수 있나요?</b>	29
4-1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병가를 갈 수 있습니다.	
4-2 질병 등으로 인해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합니다.	
<b>V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나요?</b>	35
5-1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수학할 수 없습니다.	
5-2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b>VI 국외여행을 할 수 있나요?</b>	39
6-1 국외여행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6-2 국외여행허가 위반 시 편입이 취소됩니다.	
<b>VII 군사교육소집은 어떻게 하나요?</b>	43
7-1 편입 후 가급적 6개월 이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습니다.	
7-2 군사교육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7-3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VIII 의무복무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49

**8-1** 의무복무기간은 편입일부터 포함합니다.

**8-2**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연장복무하게 됩니다.

**IX 어떤 경우에 편입취소 되나요?** ..... 53

**9-1** 편입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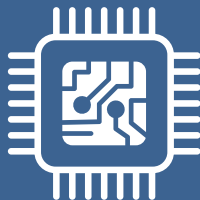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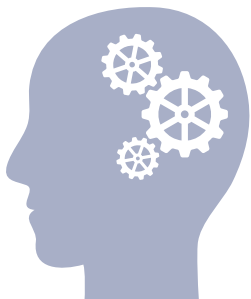
**9-2**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9-3** 편입취소 되는 것을 한시적으로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X 복무만으로 후 예비군훈련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59

**10-1** 예비군훈련은 받아야 합니다.

**10-2** 이런 경우 예비군훈련 또는 동원훈련이 보류됩니다.



## 산업기능요원이란?



· 산업기능요원 제도란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복무하도록 지원하는 병역 대체복무제도입니다.

·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가지고 34개월 동안 복무해야 하며, 보충역은 기술자격이나 면허가 없어도 되고 23개월 동안 복무해야 합니다

※ 정보처리분야의 경우 전공 등 별도자격요건 필요

“

- ▶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에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에서, 보충역의 경우 편입당시 병역지정 업체에서 제조·생산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분야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 ▶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동안 다른 업무를 함께 하거나 근로시간 중에 개인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입취소, 연장복무 등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업체에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면 관할 지방병무청 등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 특히,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기간 중에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



01

##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 1-1 병역지정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 1-2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 1-3 병역지정업체에서 하는 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 1-4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 1-5 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1-6 산업기능요원 고충처리를 위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병역지정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 ▶ **현역병 입영대상자**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기술 자격의 직무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별도의 분야
- ▶ **보충역**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제조·생산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분야, 건설공사의 현장분야
- 병무청장이 인정한 별도의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무분야변경신청서 제출)

- 편입당시의 기술자격 외의 다른 기술자격으로 제조·생산 분야에 근무하는 경우
-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재신체 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편입당시 분야가 아닌 다른 생산·제조분야 등에 근무하는 경우
- 병역지정업체가 화재 등 재해로 공장을 사용할 수 없어 다른 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하고 생산설비를 옮겨 임시로 조업하는 경우
-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이 생산설비의 폐쇄·이전·축소 등으로 병역지정업체의 편입당시 해당 직무 분야가 아닌 생산·제조분야에 복무하는 경우

### TIP 편입당시의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않은 위반사례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병역지정업체의 사장이 운영 하는 ○○소재 개인사업체에 3개월 동안 근무하며 주간예 공무원 학원 수강
- ▶ 병역법 위반 :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 TIP 편입당시의 기술자격을 직무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위반사례

- 전자기기기능사 자격증으로 편입한 산업기능요원이 업체 사장의 지시에 따라 개발부 연구원으로 8개월 동안 근무
- ▶ 병역법 위반 : 8개월 연장복무

### TIP 편입당시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위반사례

-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하고 일과시간 중에 본인 회사 업무를 수행함
- ▶ 병역법 위반 : 편입취소 및 고발(3년 이하의 징역)

##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 ▶ 함께 할 수 없는 업무

- 민법·상법에 의한 기업의 이사·감사·상무 등 임원
- 편입당시의 제조·생산 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 등

### ▶ 개인 영리활동 금지

- 근로시간 중에는 개인 영리활동 금지

### TIP 사무관리 업무를 한 위반사례

- 정보처리 업체에 편입한 산업기능요원이 업체 사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급여 등 경리업무를 5개월 동안 근무

### ▶ 병역법 위반 : 5개월 연장복무

## 병역지정업체에서 하는 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 ▶ 바꿀 수 있는 대상자

- 편입당시 가지고 있는 기술자격 외의 다른 기술자격 분야에 복무 하고자 하는 사람
- 현역입영대상자로서 편입한 사람이 재신체검사결과 4급 판정을 받고 편입당시 기술자격 외의 제조·생산 분야 또는 제품 운송 분야에 복무하고자 하는 사람 등

### ▶ 보충역

- 병역지정업체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복무분야 변경신청서를 제출
-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복무분야변경신청서
  - 새로운 분야 기술자격증 사본(4급 판정자는 필요 없음)
- ※ 단, 현역입영대상자로서 편입한 사람이 4급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정보처리, 전자 계산기조직 응용)을 소지하고, 정보처리 직무분야를 전공하여야 함.

##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 병역법 위반으로 편입취소, 연장복무 등의 행정처벌을 받습니다.

(병역지정업체장의 지시에 의거 부득이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유형	내용	처리기준	
		위반기간	의무자
1.편입 당시 병역지정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	가.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경우		연장 복무
	나. 승인 또는 신상변동 통보 없이 교육 훈련, 출장, 파견근무를 한 경우	3개월 이상	연장 복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경고
2.편입 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분야 근무	가. 편입당시의 연구·기술자격·면허 분야가 아닌 분야(연구·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직 영업직 등 다른 분야)에 근무한 경우		연장 복무
	나. 편입당시 연구·기술자격·면허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연구·제조·생산 분야에 근무하거나 편입 당시의 분야와 겸하여 근무한 경우	3개월 이상	연장 복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경고
3.검직금지 규정 위반	병역지정업체의 이사·감사 등 임원을 겸직하거나 연구 또는 제조·생산에 지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을 한 경우	1개월 이상	연장 복무
		1개월 미만	경고
4.수학규정 위반	의무복무기간 중 신상변동 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경우		연장 복무
5. 동일사항 반복 위반	가. 연장 복무 후 다시 연장 복무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		편입 취소
	나. 경고 이후 다시 경고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연장 복무
	다. 시정 이후 다시 시정에 해당 하는행위를 한 경우		경고

## 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의무자는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 후 신고한 경우에는 연장 복무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고대상 : 편입당시 해당분야(업체) 미중사

▶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무위반행위 내용을 빠짐없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 병무청장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반드시 본인이름으로 신고
- 병무청 홈페이지, 전화, 서신 등 모든 매체 사용 가능

### TIP 복무위반행위 신고화면 들어가기

· 병무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국민신문고 → 복무위반행위신고 → 신고하기

### ▶ 실태조사관 신고조사

- 비밀유지조사 → 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 신고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실태조사  
→ 조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 ▶ 신고조사 결과처리

- 실태조사 결과 업체가 고발, 경고, 주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는 행정처벌의 책임이 면해지며 본인이 원하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이 가능함
  - ※ 전직은 위반행위를 한 본인이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함
- 전직을 원하는 경우 업체가 주의 등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병역지정업체장 또는 직접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함

※ 업체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임금체불, 폭행·폭언 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 / 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으로 신고

## 1-6

### 산업기능요원 고충처리를 위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업체의 부당한 행위, 고충·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청	상담관	연락처
서울청	실태조사계장	02-820-4563
부산청	산업지원계장	051-667-5323
대구경북청	산업지원계장	053-607-6313
경인청	산업지원계장	031-240-7312
광주전남청	산업지원계장	062-230-4315
대전충남청	산업지원계장	042-250-4314
강원청	소집계획계장	033-240-6309
충북청	소집계획계장	043-270-1311
전북청	소집계획계장	063-281-3311
경남청	산업지원계장	055-279-9314
제주청	사회복무계장	064-720-3217
인천지청	산업지원계장	032-454-2313
경기북부지청	산업지원계장	031-870-0810
강원영동지청	사회복무계장	033-649-4216



“

- ▶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 중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파견을 갈 수 있습니다.
- ▶ 의무복무기간 중 출장·파견근무 할 수 있는 기간은 통틀어 1년 이내 입니다.
- ▶ 출장·파견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내용 및 근무지 등을 포함하는 승인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승인 또는 신상변동 통보 없이 출장·파견근무한 경우에는 연장복무처분 될 수 있으니 업체에서 출장·파견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신상변동 통보를 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02

출장·파견은  
갈 수 있나요?

- 2-1 출장·파견을 갈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 2-2 출장승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2-3 파견승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2-1

### 출장·파견을 갈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 국내 교육훈련 : 의무복무기간 중 모두 합하여 6개월
- ▶ 국내 파견근무(출장 포함) : 의무복무기간 중 모두 합하여 1년
- ▶ 승인절차
  - 3개월 이상 국내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 승인
    - 병역지정업체장이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파견(승인없이 파견시, 연장복무 등 처분)
    - ※ 승인 신청 시 산업기능요원 서명 필요
  - 3개월 미만 국내교육훈련 및 병역지정업체간의 파견근무 : 신상변동 통보
  - 병역지정업체장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 후 파견(신상변동 통보 없이 파견시, 연장복무 등 처분)
    - ※ 업체에서 신상변동 통보 시 산업기능요원 서명 필요
  - 7일 이내 국내교육훈련·파견근무 : 복무기록표에만 기재
    - 병역지정업체장이 복무기록표에만 기재

### → 출장 및 파견의 의미

- “국내 출장근무”는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소속으로 해당 업체에서 개발·제조 및 생산한 제품의 설치·시험가동 및 기술지도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른 업체나 장소에서 업무수행을 하는 것을 말함
- “국내 파견근무”는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소속으로 공동 연구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 및 기술도입계약서 등에 따라 파견된 업체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것을 말함

## 2-2

### 출장을 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 출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병역지정업체간의 출장
- 산업기능요원이 제조·생산한 기계·장비 등의 설치 또는 시험가동에 따른 기술지도 등

### ▶ 출장이 제한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영업소 출장
- 협력업체 등에 수금 출장
- 각종 전시회의장 등에서 영업활동 등 판촉사원 활동

#### TIP 출장에 관한 위반사례

- 계약업체에 편입한 산업기능요원이 업체 사장의 지시에 따라 특정지역의 수금관리원으로 근무하며 병원, 약국 등을 상대로 6개월 동안 수금 활동

▶ 병역법 위반 : 연장복무

## 2-3

### 파견을 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 파견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 업종 또는 분야의 병역지정업체간 파견
- 동일법인내 비병역지정업체 제조·생산 공장 파견
- 그 밖에 제조·생산한 기계·장비 등의 설치 또는 시험운영에 따른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견

### ▶ 파견이 제한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의 해당 업체로의 파견
- 그 해 고발·경고·주의 처분을 받았거나 그 해의 인원 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로의 파견
- 파견 받는 업체의 근무 장소에 파견자 1인만 근무하는 파견
- 파견 받는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의 파견

#### TIP 동일법인내 파견 위반사례

- ○○소재의 병역지정업체에 편입한 산업기능요원이 사장의 지시에 따라 동일 법인내의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공장에 파견승인 없이 5개월 동안 근무

▶ 병역법 위반 : 5개월 연장복무

#### TIP 파견기간 위반사례

- ○○소재의 병역지정업체 사장이 산업기능요원을 동일 법인내의 비병역지정업체인 다른 공장에 파견승인을 받아 근무시키다가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로 복귀시키지 않고 13개월 동안 계속 근무시킴

▶ 병역법 위반 : 13개월 연장복무

“

- ▶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 중 업체가 폐업되는 등 부득이하게 복무할 수 없는 경우(당연전직)나 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등 본인의 원에 의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승인전직)을 받고 다른 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습니다.
- ▶ 당연전직·승인전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6개월 복무후 승인전직은 14일) 이내에 다른 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나 추가로 연장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옮기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이 취소됩니다.

”



03

##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나요?



- 3-1 당연전직, 승인전직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 3-2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옮겨야 합니다.
- 3-3 정보처리 직무분야로의 전직은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3-4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당연전직, 승인전직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 ▶ 의무적으로 다른 업체로 옮겨야 합니다.(당연전직)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 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 ▶ 승인을 받고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습니다.(승인전직)

- ① 한 병역지정업체에서 6개월 이상 의무복무한 경우(2회에 한함)
- ② 방위산업물자 생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생산설비의 폐쇄·이전·축소 등으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승선복무 중 고용계약기간 만료로 하선한 경우 또는 선박수리 등으로 3개월 이내 재 승선이 어려운 경우
- ④ 복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 체불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된 경우
- ⑤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 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정되었을 경우(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⑥ 병역지정업체장의 부당한 복무지시에 따라 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사실을 신고하여 확인결과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신고자에 한함)

⑦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 담당하는 사람 포함)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 담당하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담당자, 상급자 등을 말함

※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중 폭력의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신고한 것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인정함

⑧ 산업기능요원이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⑨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이 아닌 사람에게 업무상의 재해(사망)가 발생한 경우

⑩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 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경우

- ⑪ 방사선·유해화학물 등 유해물질 취급 중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 ⑫ 폭행 등 유·무형력의 행사에 의한 피해로 해당업체에서 계속적 복무가 곤란한 경우
- 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복무함으로써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산업기능요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기간 6개월 이상 발생
  - 산업재해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 판정자 발생



### TIP 승인전직에 관한 위반사례

-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에서 6개월을 복무한 후 관할 지방병무청에 전직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옮겨 복무

▶ 병역법 위반 : 편입취소

### ▶ 승인을 받고 다른 업체로 옮겨 근무하는 절차입니다.

#### - 승인신청서 제출

-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 승인신청서를 제출 다만, 동일 병역지정업체에서 6개월 이상 의무복무한 사유로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직할 업체가 정해져 있어야 함

※ 승인전직 사유 ⑤부터 ⑩까지는 전직사유 발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

#### - 준비할 서류

전직 신청서, 채용동의서(1개월 이내 발행) 등 증빙자료

- 병역지정업체장은 전직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고 복무기록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 전직승인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장의 의견과 전직 희망자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제도의 목적, 상호간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옮겨야 합니다.

### ▶ 다른 업체로 옮기는 대기기간

- 당연전직 사유 발생일 또는 전직승인일로부터 3개월(6개월 복무 후 승인전직은 14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3개월 이내 연장, 6개월 복무 후 승인 전직은 제외)
- 최초 3개월(또는 14일)의 전직대기기간은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되나 추가되는 3개월의 전직 대기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됨
- 전직대기기간 내 다른 업체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 편입 취소 됨
  - ※ 전직하지 않고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직대기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TIP 유의사항

- 전직 승인 시에 반드시 업체의 동의를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하고도 14일 이내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산업기능요원이 직접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장의 의견을 별도로 제출 받아 처리하고,
  - 병역지정업체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의견 미제출시에는 전직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 전직승인을 얻은 사람이 원래 병역지정업체에 계속 복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다른 업체에서 복무하기 전에 전직승인 취소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실상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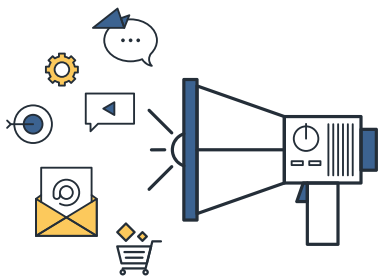
## 정보처리 직무분야로의 전직은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대상 업체

- 정보처리업체, 게임S/W제작업체, 영상게임기제작업체, 애니메이션제작업체, 정보통신기기제조업체, 방위산업체

### ▶ 전직 대상

- 2년 이상 정보처리분야를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현역은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자격증 취득자)
- ※ 보충역의 경우,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자격증소지자는 전공학과 또는 기술훈련 등 경력기간 1년 이상



##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전직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인전직대상자로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3월 미만 남은 사람 (다만, 전직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결정된 경우에는 제외)
- 그 해 고발·경고·주의 처분을 받았거나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 당해 산업기능요원이 전직하는 경우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 대기업·중견기업으로의 전직(보충역은 중견기업 전직 가능)
-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의 해당업체로의 전직
-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포함)에서 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이 농업회사법인이나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로의 전직 또는 그 반대의 경우
- 정보처리 직무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서의 편입자격이 없는 사람의 정보처리 직무분야로의 전직



“

- ▶ 산업기능요원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의무복무기간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지각, 조퇴 등의 경우 모두 합하여 8시간을 1일 휴가로 계산합니다.
- ▶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의무복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통틀어 30일 이내 병가는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초과기간은 연장 복무 해야 합니다.

”



## 04

휴가, 병가를  
갈 수 있나요?

4-1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병가를 갈 수 있습니다.

4-2 질병 등으로 인해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병가를 갈 수 있습니다.

### ▶ 휴가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기간만큼 연장복무

### ▶ 결근

- 1일 기준 근로시간 : 8시간(무단결근 일수는 연장복무)
- 8일 이상 무단 결근시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 TIP 무단결근의 연장복무 사례

- 산업기능요원이 연간 회사에 규정된 연가일수 20일 중 20일 모두를 사용하였으나 잔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여, 5일 동안 결근
- ▶ 병역법 위반 : 5일 연장복무

### ▶ 지각, 조퇴

- 개인별 복무상황부에 기재 후 병역지정업체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 결재 가능

- 지각·조퇴·외출(공무상 외출 제외)은 모두 합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간 휴가일수에서 공제 또는 연장복무

#### TIP 규정된 연가일수 초과한 위반사례

- 산업기능요원이 1년 동안 회사에 규정된 1년의 연가일수 20일을 모두 사용하고, 하루는 4시간 조퇴, 하루는 사적인 4시간 외출
- ▶ 8시간에 해당하는 1일 연장복무

### ▶ 병가

- 30일 이내의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초과 기간은 연장복무(연속하여 7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진단서 제출)
- ※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휴직기간 의무복무기간 포함

#### TIP 병가로 인한 연장복무 사례

- 산업기능요원이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 질병으로 60일 동안 병가를 사용
- ▶ 30일 연장복무

## 질병 등으로 인해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합니다.

### ▶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업기능요원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할 수 없는 경우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신청하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 받아
-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직접 관할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 ※ 병역판정검사기간 중에는 신청한 날에 병역판정검사 가능함
- 병역판정검사이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 병무용진단서(병무청 지정병원 발행)
  - X-ray, CT, 각종 검사결과지 등이 있는 경우

### ▶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 결과 처리

- 신체등급 5급 : 편입취소하고 전시근로역 처분
- 신체등급 6급 : 편입취소하고 병역면제 처분
- 신체등급 1급 내지 4급 : 산업기능요원으로 계속 근무

### TIP 참고사례

-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질병으로 재신체검사를 받아 4급이 된 경우 의무복무기간은 바뀌지 않음

- ※ 병무청 지정병원 확인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 지정병원 조회

“

- ▶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학은 가능합니다.
- ▶ 수학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편입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05

##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나요?



5-1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수학할 수 없습니다.

5-2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 5-1

###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수학할 수 없습니다.

#### ▶ 수학금지

-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불가
- 주간학과 학적보유자가 동일학과 야간과정을 수학하여 주간과정의 학점취득 불가

#### ▶ 수학금지 위반처벌

- 위반내용 : 산업기능요원이 주간에 수학한 경우
- 위반 시 : 편입취소 또는 연장복무

## 5-2

###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 ▶ 수학할 수 있는 경우

-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 야간 또는 주말에 운영하는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등 수학

- 복무만료예정자가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 수업 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입학)하여 사실상 수업을 받지 않는 경우(다만, 연간 남은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내고 수업을 받는 것은 가능함)

#### TIP 주간대학 수학 위반사례

- 산업기능요원은 주간대학에서 수학할 수 없으나,
  - 대학 주간학과에 1년간 수학
- ▶ 병역법 위반 : 편입취소

#### TIP 주간과정의 야간수업 위반사례

- 경영학과 주간대학 학적 보유자가 입영후학을 신청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하면서, 야간대학의 동일학과 과정에 복학하여 야간에 1년 수학
- ▶ 병역법 위반 : 1년 연장복무

“

- ▶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 중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업무 수행 또는 개인여행 등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 의무복무기간 중 국외여행 할 수 있는 기간은 모두 합하여 1년이며, 3개월 이내의 국외여행은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됩니다.
- ▶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행목적 및 여행지 등을 포함하는 국외여행허가신청서 및 병역지정업체장의 국외여행 추천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승인을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편입취소 및 고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06

국외여행을  
할 수 있나요?

- 6-1 국외여행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6-2 국외여행허가 위반 시 편입이 취소됩니다.

## 국외여행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 허가대상

-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국외출장 등
- 휴가기간 내 개인여행 등

### ▶ 허가신청 및 기간

-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신청서 및 국외여행허가추천서(병역지정업체의 장 추천) 제출
- 허가기간 : 모두 합하여 1년
- 복무한 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 : 모두 합하여 3개월
  - ※ 승선분야 등 해외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이 편입과 동시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편입원서와 허가신청서를 함께 제출



## 국외여행허가 위반 시 편입이 취소됩니다.

### ▶ 행정처분 대상

- 국외여행(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경우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 ▶ 행정처분내용

- 편입취소



### TIP 허가기간에 관한 위반사례

- 산업기능요원이 기술연수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3개월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기간보다 7일 늦게 입국
- ▶ 병역법 위반 : 편입취소

“

- ▶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군사교육소집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 군사교육소집은 병역지정업체의 생산·제조 활동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입 후 가급적 6개월 이내에 받게 됩니다.
- ▶ 질병, 가사사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07

## 군사교육소집은 어떻게 받나요?



- 7-1 편입 후 가급적 6개월 이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습니다.
- 7-2 군사교육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7-3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편입 후 가급적 6개월 이내에 군사교육 소집을 받습니다.

### ▶ 대상자 선발은 이렇게 합니다.

- 편입한 후 가급적 6개월 이내에
- 병역지정업체장 또는 의무자의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 희망인원이 미달할 경우에는 편입일자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결정
  - ※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제도 활용 가능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병무민원 포털 → 전문/산업 → 전문연구/산업기능/승선 민원신청 → “전문 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화면)

### ▶ 군사교육소집 실시를 늦출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직대기 중인 경우(전직대기 전 통지서 받은 사람, 잔여 의무 복무기간 3개월 미만인 사람 군사교육소집 가능)
- 30일 이상 병가중인 경우

### ▶ 군사교육소집 제외 및 미실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 또는 동일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
- 신체등급 4급으로서 군사교육소집제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퇴영)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 신체검사에서 명시된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틀어 6개월이 초과된 사람
  -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
-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 등에서 기본군사훈련(20일)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
-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군사교육소집이 제외된 후 편입된 사람

## 7-2

### 군사교육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 군사교육소집 선발자 인터넷 예고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병무민원 포털→  
전문/산업 → 전문연구/산업기능/승선 조회 및 발급 →  
"산업군사교육소집일자/부대조회" 화면

#### ▶ 군사교육소집 연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심신장애, 회사 주요업무 수행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경우 등

## 7-3

###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 미 교육자 처리는 이렇게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않은 사람은 편입취소
-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어도 복무만료 처분을 보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 복무만료 처분)

#### ▶ 군사교육소집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부대 밖으로 내보내는 사유(퇴영)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훈련기간 중 직계 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범죄사실로 훈련기간 중 형사입건 되는 경우
- 훈련기간 중 범죄행위를 한 경우 등

“

- ▶ 의무복무기간은 현역입영대상은 34개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은 23개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단 후 편입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기간(23개월)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을 반영하여 정합니다.
- ▶ 의무복무기간 계산은 편입일자부터 포함되며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연장복무를 해야 합니다.

”



## 08

## 의무복무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8-1 의무복무기간은 편입일부터 포함합니다.
- 8-2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연장복무하게 됩니다.

## 8-1

### 의무복무기간은 편입일부터 포함됩니다.

#### ▶ 의무복무기간 계산

-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날부터

## 8-2

###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연장 복무하게 됩니다.

#### ▶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 휴직(근로기준법에 의한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제외) 또는 정직 기간
- 병역지정업체의 휴업·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 기간  
(시설·장비운영 등을 위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
- 의무복무기간 중 모두 합하여 30일을 초과하는 병가 또는 모두 합하여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 기간
- 승선복무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대기기간을 초과한 기간
-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기간

- 전직대기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에서 복무하지 않아 연장 복무가 결정된 기간
- 의무복무기간 중 모두 합하여 8일 미만의 무단결근 기간

#### TIP 참고사례

- 병역지정 업체에서 기계조립 업무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이 밀링작동 중 손가락이 끼여 치료를 위해 8개월 동안 휴직
- ▶ 휴직기간 8개월 모두 의무복무기간 포함
- ※ 업무상 재해·질병의 휴직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정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함

“

- ▶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 중 복무하고 있는 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편입이 취소됩니다.
- ▶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의 원래 신분으로 돌아가서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해야 합니다.

”



09

## 어떤 경우에 편입취소 되나요?



- 9-1 편입취소 사유는 이렇습니다.
- 9-2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 9-3 편입취소를 한시적으로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 편입취소 사유는 이렇습니다.

### ▶ 편입취소사유

-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의무복무기간 중 모두 합하여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 해당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또는  
농·어업인 후계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전직대기기간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 업체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 편입 또는 전직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산업기능요원이 수학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 TIP 편입취소에 해당되는 사례

- 산업기능요원이 적성과 직장환경에 적응치 못하여  
다른 업체에 취업하려는 목적으로 스스로 퇴직
- ▶ 편입취소

##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 ▶ 의무부과

-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원래 신분으로 돌아가서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단축

- 단축대상 : 편입 취소된 사람
- 단축기간
  - 군사교육소집을 받은 기간
  -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제외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  
4일마다 1일씩 산정한 기간

### ▶ 복무기간 단축 제외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어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 사람은 복무기간 단축혜택 제외

### TIP 편입취소 후 복무기간 단축 사례

·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A씨는 군사교육소집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역지정업체에서 270일 근무 후 해고되어 편입 취소가 된 경우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일수

▶ 복무기간 단축 : 89일

【 군사교육소집기간(29일) + (의무복무기간(241일) ÷ 4일) 】

·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B씨는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병역지정업체에서 90일 근무 후 해고되어 편입취소가 된 경우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일수

▶ 복무기간 단축 : 22일

【 의무복무기간(90일) ÷ 4일 】

## 9-3

### 편입취소 되는 것을 한시적으로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 ▶ 한시적으로 뒤로 미룰 수 있는 대상

–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사람

#### ▶ 뒤로 미루는 절차

– 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편입취소 유보원서 및 구제신청 또는 소송제기 서류

#### ▶ 뒤로 미룬 이후 결과처리

- 적법, 정당한 해고로 판정된 경우 : 편입취소 후 의무부과
- 위법, 부당한 해고로 판정된 경우 : 복직 또는 전직

### TIP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하였으나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병역법 위반 : 편입취소

### TIP 유의사항

· 화해의 경우

-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의 신분을 유지하되 당해 구제신청 소요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단, 화해조서 등에 부당한 해고로 확인된 경우는 의무복무기간 산입)

· 취하의 경우

- 취하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후 의무부과 원칙  
단, 업체와 의무자가 합의하여 복직을 전제로 소를 취하는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의 신분을 유지하되 당해 구제신청 소요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각하 또는 기각의 경우

-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후 의무부과

“

- ▶ 산업기능요원은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에 편성이 됩니다.
- ▶ 또한 병역법 제44조에 의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이므로 병역법 제49조에 의해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에 해당되며, 동원지정이 된 경우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 ▶ 그러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자는 동원지정 방침상 동원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예비군훈련을 받게 됩니다.

”



# 10

## 복무만료 후 예비군훈련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10-1** 예비군훈련은 받아야 합니다.

**10-2** 이런 경우 예비군훈련 또는 동원훈련이 보류됩니다.



## 예비군훈련은 받아야 합니다.

### ▶ 훈련대상 및 시간

(단위 : 시간)

구분		계	동원 훈련	동미참 훈련	항방 기본 훈련	항방 작계 훈련	소집 점검	예비 시간
신규 전역자(간부/병)								160
병	1~4 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132
		동원미지정자		32시간				128
		공군 동원미지정자		2박3일				132
	5~6 년차	동원미지정자			8시간	12시간 (6h×2)		140
	7~8년차							160
간 부	1~6 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132
		동원미지정자		2박3일				132
	7~8년차							160

## 이런 경우 예비군훈련 또는 동원훈련이 보류됩니다.

### ▶ 법규보류 대상자

- 법규보류 대상자 : 국방부장관이 국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비군에 대하여 동원(훈련) 및 예비군 교육훈련을 보류한 사람
  - ※ 주요 법규보류 대상자 : 국회의원,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등

### ▶ 후순위대상자자

- 지방병무청장이 전시 국가동원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방위산업체 등에 근무하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중 병력동원소집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한 사람(후순위 승인요청시)
  - ※ 후순위조정 승인대상 : 전시동원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방위산업체나 동원업체(해운업종의 경우 선장, 항해사, 기관사 등)의 필수요원 등

## | 산업기능요원 제도 상담 전화번호 |

청별	주소	우편 번호	전화번호	FAX
병 무 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2호	35208	042)481-2815~6	042)481-2819
서 지방병무청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07360	02)820-4491 4463,4495	02)820-4151
부 지방병무청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48208	051)667-5238 5255, 5257, 5259	051)667-5123
대구·경북 지방병무청	대구 동구 동내로 63	41069	053)607-6281~5 6256	053)607-6250
경 인 지방병무청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16440	031)240-7281~6	031)240-7523
광주·전남 지방병무청	광주 동구 양림로 119번길 8	61489	062)230-4253~4 4355	062)230-4293
대전·충남 지방병무청	대전 중구 중앙로 16번길 5	34944	042)250-4253~4 4256	042)250-4127
강 원 지방병무청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	24342	033)240-6255 6266	033)240-6260
충 북 지방병무청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	28653	043)270-1351~2	043)270-1370
전 북 지방병무청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	55033	063)281-3143 3253	063)281-3250
경 남 지방병무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	51439	055)279-9254~6 9362	055)279-9387
제 주 지방병무청	제주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	63219	064)720-3254	064)720-3260
인 병 무 지 청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22205	032)454-2281~3 2285~6	032)454-2417
경 기 북 부 병 무 지 청	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 76	11642	031)870-0253	031)870-0358
강 원 영 동 병 무 지 청	강원 강릉 울곡로 2705	25590	033)649-4216	033)649-4280

이 안내서는 「산업지원 병역일터」 사이버 교육방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병무민원 상담소 : 1588-9090  
 병무청 누리집 : [www.mma.go.kr](http://www.mma.go.kr)  
 산업지원병역일터 : <http://work.mma.go.kr>  
 (복무관리포털 및 구인구직 시스템)